

[공고번호 2021-101호]

## 「2021년 (청년)창업기업 육성 우수상품 발굴 및 판로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

홈앤쇼핑과 (사)청년창업가협회에서는 잠재성과 상품 경쟁력을 보유한 소비 및 생활재 스타트업 상품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「2021년 (청년)창업기업 육성 우수상품 발굴 및 판로지원」 사업을 진행하오니, 본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창업 스타트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1년 (청년)창업기업 육성 우수상품 발굴 및 판로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2021. 10. 26(화) ~ 2021. 12. 10(금)
- 사업내용 : (청년)창업기업 보유 상품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
- 지원대상 : 제조·F&B·농수산물·디자인·콘텐츠·지식 기반 서비스업 융합 분야 등 우수한 제품 및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가 또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  
※ 사업 공고일(2021. 10. 26) 기준 만 39세 이하(1981. 10. 26. 이후 출생)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(2014. 10. 26 이후개업)

### ○ 지원내용

- 1) YouTube 등 상품 홍보영상 제작 (3~5분 이내)
  - 지원규모 : 15개 업체
  - 지원 금액 : 1개 업체당 최대 2백만 원(VAT포함)
  
- 2) 영상 자료화면 제작 지원 (전시회 홍보 영상, 방송 인서트 등)
  - 모집규모 : 7개 업체
  - 지원 금액 : 1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(VAT포함)

※ 위 1), 2) 지원내용 복수 지원 불가

#### 지원 제외대상 (공고일 현재)

-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
-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(도소매, 무역업 등)
-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불가 기업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)

## □ 신청 안내

- 신청기간 : 2021. 10. 26. (화) ~ 11. 2. (화) 17:00
- 신청방법 : (사)청년창업가협회 E-mail 접수/ startups@startups.or.kr

## □ 선정 방법 ※본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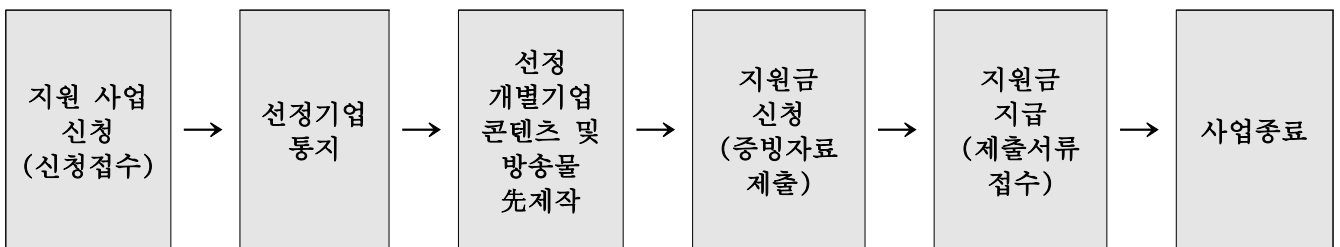
- 1) 상품홍보영상 대상기업 선정 : 2021.11.04.(목)
- 2) 영상제작 지원 대상기업 평가 : 2021.11.05.(금)\_개별통지
  - 1) 제품 설명서 내용 포함한 5분 분량 발표자료 제출(ppt, pdf 등 자유양식)
  - 2) 발표평가 현장에 라이브 커머스·홈쇼핑 채널에 입점할 실물 제품 지참 필수

※ '영상' 지원기업 신청에 한하며, 코로나 19 단계 격상 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
- 최종 지원기업 선정 : 2021. 11. 05(금)

## □ 선정 기준

- 기업선정 : 내부 선정위원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- 결과통보 : 선정기업 개별통보

## □ 지원 사업 절차



## □ 유의사항

-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후 자발적 포기 시 향후 동일 지원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비용정산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미충족 부분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추가 증빙 후에도 증빙이 부족한 경우 전체 지원금 지급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항목 증빙이 부당하게 제출되었거나 위·변조 되었다고 판명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합니다.

## □ 제출서류

<필수서류>

순번	구분	제출서류
1	참가신청서 (사업계획서)	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, 양식 준수하여 작성 (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서명 날인 필수)
2	사실증명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(법인일 경우) 중소기업확인서 1부
3	기타 제출 서류	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별지 양식) 국세·지방세 납입증명서 제품소개서 1부(자유양식)

※ 제출 시 파일명 기업 명 기재 필수 : 청년창업기업 지원 사업 신청서\_(기업명).zip

## □ 제출처 및 문의

- 청년창업가협회 중앙사무국 강지혜 간사  
(02-2264-9034 / startups@startups.or.kr)
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(사)청년창업가협회 [기업 지원 사업 운영규정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- ③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
- 기타 :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